

현행법과 언론수용자 권익

양 삼 승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I. 머 리 말

언론기능의 강화와 언론피해 심각성의 증대

A. 언론의 기능: 언론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언론은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언론은 「무관의 제왕」이며,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사부」며,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하는 말들은 모두 언론의 전통적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언론의 본질적 기능은 다음의 2가지에 있다.

즉 하나는, 사회의 각 분야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함으로써 언론수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공정한 여론을 형성」 함으로써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 보도」와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하여는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이를 수호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투쟁해 온, 그리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언론인들에게 우리는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B. 언론의 숙명적 문제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가꾸고 키워가야 할 언론에도, 「정확한 사실 보도」와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요소들을 스스로 안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먼저, 「정확한 사실 보도」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로서는 첫째, 언론의 속성상 정확성(accuracy)이 신속성(speed)에 의하여 희생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언론기관의 성실한 취재에도 불구하고 취재원(news source)의 신뢰성(reliability)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로서는(이는 물론 정확하지 않은 사실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첫째, 기사의 작성에 있어서 주관적인 해석(subjective interpretation)을 가함으로써 객관성(objectivity)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이는 특히 편집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양쪽 당사자(both sides)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의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균형성(balance)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는, 오늘날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영리법인의 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관계상(아니면 적어도 발행 부수나 시청률과 이에 직결되는 광고수입등에 절대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상) 판매부수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막강한 광고주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업성(commercialism), 선정성(sensationalism)에 호소하거나,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부응해 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의 위험요소에 기하여 실제로 잘못된 보도가 행해졌거나 또는 행해져야 할 보도가 행해지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여기에서 적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위와 같은 숙명적 문제점을 언론이 안고 있다는 것은 언론인들 스스로도 수긍하리라고 믿는다

C. 현대사회와 문제성의 증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현대사회의 특성으로서는 다양화와 전문화를 들 수 있다.

우선 전자매체의 경우를 보면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종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언론매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Cable TV의 등장과 함께 시청할 수 있는 channel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위성방송의 실시와 함께 channel의 수 및 가시청범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인쇄매체의 경우에도 사회의 다양화·전문화에 따라 각종의 신문·잡지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언론매체들이 자유경쟁,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격렬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한편으로는 그 수준이 향상되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역기능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인쇄매체이든 전자매체이든 각 언론사는 각자자기가 어떤 뉴스를 최초로 보도하는 영예를 누리고 싶어하고, 그 결과 deadline에 쫓기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정확성이 신속성에 희생될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 격렬한 생존경쟁의 현장에서 상업성이 우위를 차지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전자매체의 경우에는 방송되는 전체 시간 중에서 뉴스 등 사실보도에 할애되는 시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보도할 뉴스가 폭주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균형성을 포기하고 일방만의 입장을 보도함으로써 만족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D.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기능이 보다 다양화되고 확대 되면서 그 반면으로 부정확한 보도로 인하여 언론에 의한 피해는 증대되어 갈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여기에서는 언론수용자의 입장에서 현행법상 어떻게 그의 권익을 수호하고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시야를 가장 크게 넓혀서 언론의 기능과 언론수용자의 권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알기 쉽게 도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언론의 기능과 언론수용자의 권익의 조화방법>

- A. 언론에 의한 자율적(사전적)규제
- B. 현행법률에 의한 타율적 규제
언론에 의한 자율적(사전적) 규제
 - a. 사전적 예방(금지청구권)
 - b. 사후적 규제
 - 가. 형사적 규제
 - ㄱ. 명예·신용훼손죄
 - ㄴ. 피의사실 공표죄
 - 나. 민사적 규제

ㄱ. 민법상 규제

1. 손해배상 구권

- ① 재산적 손해
- ② 정신적 손해(위자료)

2. 명예회복청구권

ㄴ. 특별법상 규제(반론보도청구권)

II.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의 유형

현행법상 언론으로부터 언론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서, 우선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인권침해의 유형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권침해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① 뉴스보도에 의한 침해 ② 드라마에 의한 침해 ③ 코미디에 의한 침해 ④ 르포형식의 보도에 의한 침해 ⑤ 단순한 화면만의 보도에 의한 침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역시 인권침해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른 분류일 것이므로 위 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A. 성명권 침해

자기의 성명(자연인의 경우)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이 무단히 또는 조건에 위배하여 광고 등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성명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성명권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이 성명권이 불법행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B. 초상권 침해

가. 초상권이라 함은 자기의 초상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언론매체 중에서도 특히 TV와 같은 영상매체는 전파에 의한 영상의 전달을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므로, TV의 경우에 특히 초상권 침해의 위험성이 많게 된다.

나. 이와 같은 초상권의 침해는 앞서 본 성명권의 침해와 마찬가지로 주로 인격권의 침해라는 각도에서 고려되어 왔다. 왜냐하면 초상권 침해로부터 어떠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영화인, 체육인, 연예인 등 인기인을 이용한 광고가 널리 행해지고 또한 그 효과가 인정되어감에 따라 초상권에도 재산적인 가치가 부여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초상권의 재산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다. 그러나 초상권의 침해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정치가와 이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의 초상권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공공의 집회나 데모행진 등 공공의 행사에 참가한자는 이러한 행사를 보도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는 초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C. 프라이버시 침해

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라 함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오늘날 각종의 언론매체가 발달하고 특히 흥미위주의 기사를 주로 취급하는 상업잡지가 범람하게 됨에 따라 그 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인권의식이 점점 향상되어감에 따라서, 현재는 우리나라의 헌법에서까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면으로 두기에 이르렀다.

나. 개인의 이러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명예훼손과 서로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구별되고 있다.

첫째, 명예훼손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그 대상이지만, 프라이버시는 사회적 평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의 사생활 그 자체가 대상으로 된다.

둘째, 따라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가 진실에 부합한다는 증명이 있으면 면책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의 경우에는 진실의 증명으로는 면책될 수 없고, 오히려 진실인 경우에는 더욱더 피해의 정도가 커질 수 있다.

셋째, 법인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있으나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있을 수 없다.

다. 그리고 이러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역시 유명인이나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통상인에 비하여 그 보호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다. 물론 이점에 관련하여서는 「보도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2가지 법익의 상호 조화와 조정이 문제로 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공공의 이익과 공적 존재의 이권」을 염두에 두고 해결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D. 명예 및 신용의 훼손

가.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례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예 및 신용훼손의 경우이다. 여기에서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신용이라 함은 사람의 재산적 거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은 광의에 있어서 명예의 일종으로서 명예중에서도 재산적 거래에 관한 명예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언론에 의한 명예·신용훼손이 일어나는 경우를 나누어 보면 ① 보도 ② 논평 ③ 픽션물 ④ 광고에 의한 경우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보도의 경우에는 오보이든 허보이든, 그리고 전문보도이든 인용보도이든 모두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보도된 내용 그 자체에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외의 어떤 다른 사실을 보도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결국 그릇된 인상을 주게되는 결과로 되는 경우에도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된다는 점이다.

둘째, 논평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단순한 사실보도 이외에 주관적 평가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보도의 경우보다는 더욱더 언론 자유의 보장에 중점을 두어서 명예·신용이 훼손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픽션물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속드라마의 경우로서 이 경우 명예·신용의 훼손문제는 예술의 자유와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광고에 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광고는 여론형성 등의 공적인 임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최소한 상업광고에 대하여는 언론사가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인 광고주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명예나 신용의 회복조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명예 회복조치(예를 들면 사과광고 등)를 보도할 지면이나 시간 등은 이를 피해자를 위 하여 확보해 줄 의무(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부담한다고 생각된다.

III. 언론에 의한 자율적·사전적 규제

A.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전적 예방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찰이 적은 방법이 언론사 스스로의 자율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의 숙명으로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이념 즉 「언론의 자유」와 「인권의 보호」라는 이념 중 언론자유 침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방송위원회 등의 규제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이에 그치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언론사 스스로도 더욱 과감한 자세로 그 자체 내에서 내부적인 예방절차를 강화하여 사후에 생길지도 모를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B. 그리하여 언론에 공표하기 이전에 언론사의 내부에 사전적인 심의기구로서 편집종사자 및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상설적으로 설치해두고 이를 반드시 거쳐가도록 함으로써,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은 사전에 자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이미 갖추고 있는 외국의 대형 언론사의 실무를 보다 심도 깊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최소한 사내변호사(inhouse lawyer)를 채용하여 기사작성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언론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이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지 등의 점에 관한 연구를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 연구성과를 언론의 실무에 이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 해 볼만하다.

C. 그러나 이러한 언론사에 의한 자율적, 사전적 규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언론사 스스로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은 어쩔 수 없다.

IV. 법률에 의한 사전적 예방(금지청구권)

A. 언론수용자의 입장에서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지 청구권의 제도이다 이는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언론보도를 사전에 심사하여 그러한 보도가 행해질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금지청구권이 인권보호를 위하여 가장실효성이 있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반면에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치명적인 제약으로서, 언론이 혐오해 마지 않는,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언론에 대한 「사전적 검열」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될 염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명예나 프라이버시 역시 헌법상 보호를 받는 권리이며,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오늘날의 다수설과 판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일정한도」를 넘는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적 금지도 이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다.

B. 현실적으로, 금지청구권이 문제로 되는 경우는 연재기사나 연재소설의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밖에도 명예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기사나, 무단촬영된 초상사진이 게재 또는 공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금지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어떠한 내용의 보도나 줄거리 또는 사진이 게재될 것인지를 독자가 사전에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한 그 내용을 사전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도가 행해질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서 이를 사전에 저지시키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실제로 있어서 이러한 금지청구권이 이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언론수용자의 인권의식이 점차 향상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이 방법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이 금지청구권의 행사가 좀더 활발히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C. 그러면 이러한 금지청구권은 어떠한 요건 하에서 허용될 것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금지청구권은 언론의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은 대단히 엄격해야만 할 것이다.

그 행사의 요건에 대하여는 이론상 다툼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침해행위의 계속성 또는 급박성이 요구된다, 즉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는 다른 구제수단에 의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어야 한다.

둘째, 침해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는 금지에 의하여 가해자가 입을 손해보다 커야 한다(이익교량).

셋째, 침해행위가 고도의 위법성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진실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넷째, 이는 언론의 사전검열과 같은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청구의 허용은 반드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고, 그 절차는 현행 민소법상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가처분절차에 의할 수 밖에는 없다. 다만 이 가처분의 절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해자의 고의 과실 등 주관적 요건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위법한 피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V. 형사적 규제 (사후적 규제 I)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사전적 예방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사후적으로라도 이를 규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후적 규제방법으로는 형사적 규제와 민사적 규제가 있는 바, 이중 형사적 규제방법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여, 그 결과 피해자가 간접적으로 심리적 보상효과를 얻게 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현행 형법상 이러한 경우의 처벌조항으로는, 명예훼손죄(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307 조, 309 조), 신용훼손죄(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신용을 훼손)(313 조) 및 피의사실공표 죄(126 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피의사실공표 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 구전에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범죄주체는 직접적으로는 「수사기관 종사자」이지만, 언론기관 종사자가 위 범죄주체와 공범이 되어 위 죄를 저지른 때에는 형법 33 조(공범과 신분)의 규정에 따라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① 형사상의 처벌은 명예 등을 훼손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에 근본목적이 있지, 인권의 회복에 근본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②과실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③또한 처벌의 대상은 개인으로서 언론기관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형사상 처벌의 방식은 피해자의 구제수단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이라 할 것이다.

VI. 민사적 규제 (사후적 규제 II)

A. 민법상 규제 I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750 조는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론에 의한 명예·신용 등의 인권침해행위가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의 일반적 효과로서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 체계상(민법 763 조, 394 조),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언론의 피해자에게 발생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의 결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피해의 대상에 따라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의 2가지로 나누어진다.

(1) 재산적 손해의 배상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잘못된 보도에 의하여 피해자의 신용이 훼손되거나, 피해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의 가치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영업부진에 빠져 그가 경영하는 사업이 도산하게 되는 경우를 구체적인 실례를 여기에서 구태여 적시하지 않더라도 우리들 주위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모든 재산적 손해가 잘못된 보도에 의한 것으로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 그 배상의

액수는, 언론사에 크게 부담이 될 정도로 거액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책임의 경우와는 달리, 언론사의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언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재산적 손해에 관한 한 확실하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는 ① 신용 등을 침해한 보도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② 또한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를 충분히 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아니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더욱 향상되고, 법원 역시 언론피해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깊어지게 되면(이는 선진 외국의 경향에 비추어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청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법원에서도 보다 넓게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2) 정신적 손해의 배상(위자료)

a. 민법 7지조 1항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 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론에 의하여 명예 등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위자료의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한가지 어려운 점은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나열해 보면, 첫째, 침해행위의 객관적 요소로서 침해의 양태 및 정도 즉 보도의 위법성의 강약의 정도가 가장 큰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침해행위의 주관적 요소로서, 가해의 동기,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 후의가해자의 태도, 다른 청구의 인정여부(예를 들면 속보 등에 의하여 오보를 사실상 정정하고 명예·신용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피해자측의 사정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신분, 직업, 재산정도등과 아울러 넷째, 가해자 측의 사정으로서 언론매체의 종류, 기사의 게재지면이 전국판인가 지방판인가 및 발행부수 등 공표범위의 광협도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b. 위자료의 성질상 그 액수 산정의 기준이 명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참고로 위자료 액수에 관한 외국의 실무예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의 고액화 경향에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낮다는 비판이 많다.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에는 일정한 위자료 기준을 마련하여 정형적 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 위자료액이 현저히 고액화 된 것에 비하여 인격권침해에 대한 법원의 평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과거 판례에 나타난 위자료액은 최고 150 만엔 정도이고, 평균 위자료액은 45 만엔 정도라고 한다.

② 독일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신체상해의 경우보다 인격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인격의 가치에 비하여 신체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위자료의 만족적 기능과 일단 예방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그 액수가 상당히 고액이어야 한다거나, 앞서 본 잠재적 재산적 손해가 여러가지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인정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그 대신에 위자료의 형태로

배상되고 있기 때문이라든가, 또는 과거 표현범죄에 대한 과소한 벌금형이 그러한 범죄의 예방과 제재에 주효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고도 한다. 실무상 위자료의 수준은 1 만 내지 5 만 마르크 정도라고 한다.

③ 미국의 경우에는 인격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가 높기로 정평이 나있다. 수백만불씩의 위자료가 흔히 인용되고 있음은 우리가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흔히 접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에 전보적(compensatory) 기능 외에 징벌적(punitive) 기능을 강조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의 경우, 정정보도라든가 반론권 등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손해배상의 방법만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에서 오는 결과이기도 하다.

흥미있는 변화는, 위와 같이 위자료의 액수가 천문학적 습자에 달한 결과 이로 인하여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기관은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되자, 그 반작용으로 미국에서도 잘못된 보도의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권을 인정하여 이로써 피해의 회복을 구하고, 그 결과 위자료의 액수를 감소시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점이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자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소액으로 정해지고 있다는 데에 이론이 없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을 더욱 주저하게 만들고, 나아가 가해자측에게 「사전의 주의의무」와 「사후의 시정조치」를 더욱 소홀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의 이론에 의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과는 달리 정신적 손해 배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손해전보적 기능」 이외에 「만족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 때문에 위자료는 일부이나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 즉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위안」 내지는 「복수심 진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히 가해자측의 사정 즉 가해의 동기, 고의 과실의 정도, 침해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미국의 징벌적 배상에 버금가는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 할 수 있고 또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B. 민법상 규제 II (명예회복청구권)

a. 민법 764 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 불법행위의 경우 금전배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명예의 회복이라고 하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즉, 앞서 본 민사상의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잘못된 보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금전지급의 형식으로 배상하려는 것이므로, 훼손된 명예나 신용 그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구제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b. 여기에서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이다.

첫째, 명예회복처분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사죄광고」를 들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사죄광고에는 ① 명예훼손의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 문자 그대로 사죄의 뜻을 표명하는 「협의의 사죄광고」와 ② 명예훼손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단지 이를 취소함에 그치는 「취소광고」가 있다. 후자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전자의 사죄광고에 관하여는 피고의 이름으로 사죄광고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피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헌논의가 있어왔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판례(일본 최고재소 31.7. 4. 판결)는 「단지 사태의 진상을 고백하고 진사의 뜻을 표명함에 그치는 정도」의 게재를 명하는 것은 피고의 윤리적 의사·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위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사죄광고의 방법은 명예회복처분으로는 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판결에 의하여 사죄광고를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언론사 스스로가 이를 하기로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명예회복처분으로서 현재 실무상 가장 흔히 이용되는 것은 「정정보도」라는 형식으로 게재되는 「취소광고」의 형식이다. 이는 보통 특정의 신문 잡지 등에 게재장소, 게재범위, 활자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문안 등을 특정하여 정하고 그 게재를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셋째, 아직 우리나라의 실무상으로는 흔히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지만, 사죄광고가 위헌으로 인정된 마당에서 자주 이용되어야 할 방법으로는 「피해자 승소판결의 신문게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이는 피해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하여 명예훼손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이유의 요지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명예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는 언론기관 종사자 등이 명예훼손죄 등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을 게재하게 하거나, 또는 언론의 피해자가 그 범죄사실에 관련하여 무죄의 판결 등을 받은 사실을 게재 하게 하는 것 등이다.

넷째, 법원에 의한 명예회복선언으로서, 언론피해자의 피해범위가 특정지역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심있는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예를 들면, 광장이나 역전, 동사무소 등에 일정한 명예회복문안을 일정기간동안 공시하게 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c. 명예회복처분으로서 실무상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정보도 내지는 취소광고의 경우를 보면, 많은 경우 언론피해자는 반박문의 게재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언론사 스스로 원문기사 내용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는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데 반하여,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보도된 내용을 언론사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언론의 공신력과 관련시켜 이를 극히 혐오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양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과 관련하여 명예회복처분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양당사자의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보다 중간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심도깊은 연구가 행해지지 않고 있지만, 독일의 문헌에 나타난 몇 가지의 방법은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이에 관한 상세는 졸적 언론중재 1993. 가을 「민법 제 764 조에 관한 연구」 참조)

① 취소(Widerruf) : 이는 「나는 이로써 ……한 주장을 진실이 아니므로(unwahr) 또는 정확하지 아니하므로(unrichtig) 취소한다」의 형식이다. 이 단순취소의 형태가 약간 변형되면 추가로 「진실한 사건의 경위」를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② 철회(Rücknahme) 이 철회는 취소(Widerruf)가 완화된 형태이다. 완화된다는 의미는 어떠한 이유로 철회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철회자는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할 필요없이, 이미 행해진 비난을 단순히 없애버린다는 의미이다.

③ 바로잡음(Richtigstellung) : 이는 「……한내용을 ……인 것으로 바로잡는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이는 어떠한 주장의 일부만이 허위인 때 또는 그 주장의 문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특정한 인상이 잘못된 것인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바로잡음」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이러한 의사표시(바로잡음)에 의하여 어떠한 체면실추없이 가장 완화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④ 해명(Klarstellung) : 이 해명이 이용될 수 있는 경우는 원 진술자가 어떤 주장을 명문으로(wörtlich)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일반 독자가 그 문맥으로부터 보면 그러한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숨겨진 주장」의 경우에 원 진술자는 그의 진술은 이러한 (확대된 주장)을 포함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해명조의 부가문을 덧붙이는 방법이다.

⑤ 유지하지 아니함(불유지) (Nichtaufrechterhalten) : 이는 어떠한 주장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로서 「제한된 취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떤 기사의 진실성에 관한 양자간의 확증이 없이, 진술과 진술만이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쪽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기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입증을 원고가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판결에 의하여야만 한다면,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패소로 될 것이다).

이 불유지의 방법은 또한 기사작성의 시점에서는 진실한 것으로 보였거나 또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 후에 이르러 그 잘못됨이 밝혀진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⑥ 보충(Ergänzung) : 이는 보도된 사실이 진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첫째 그 보도가 한 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진술의 청구가 고려될 수 있고(정정적 보충, berichtigende Ergänzung). 둘째 원래의 주장이 그 후에 발생한 사태에 의하여 진실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überholt)에 이용될 수 있다(추후적 보충, nachträgliche Ergänzung). 전자의 예로서는 「A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하여, 법원은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는 내용을 보충적으로 알려드립니다。」를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서는,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는 후 행해진 「무죄판결」이 있는 경우에 이의 보충을 요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⑦ 거리를 둠(Distanzierung) : 이는 언론사 즉 전파자가 제 3자의 주장을 그대로 전파하였음에도 그 보도의 내용상으로는 마치 언론사의 주장을 전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그 주장은 나의 주장이 아니라 ……의 주장이었다)라고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전파자에 대하여 그러한 주장과 거리를 둘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⑧ 잠정적인 의사표시(einstweilige Erklärung): 이는 「이미 행해진 비난은 (잠정적으로)또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는 형식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특히 형벌로서 처벌받을 행위의 비만이 행해져서, 이는 형사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언론 현실에 있어서는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의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정정보도」와 「취소」의 방법만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언론사와 피해자의 쌍방이 「다 이기거나 다 지거나」의 싸움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상의 카드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위와 같은 외국의 문헌도 참고하고, 우리의 언론 현실에도 적합한 중간적인 영역의 명예회복방법을 연구하여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C. 특별법상 규제 (반론보도청구권)

이상에서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법률적 수단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망라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여러 방법들은 모두 언론사 즉, 가해자측이 형사적으로나 또는 민사적으로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구제수단이었다. 즉, 형사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기 위하여는 가해자가 가해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하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나 이에 부수하는 명예회복처분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역시 그 보도된 내용이 진실에 반하여 위법한 내용으로서, 또한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사정의 입증은 용이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보도된 내용이 진실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는(더욱이 불법행위법의 일반원칙상 보도된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입증은 피해자측에서 하여야만 한다) 소송의 현실상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이 현실이다.

그런데 시각을 바꾸어 언론에 의하여 보도가 행해지는 과정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와 같은 보도는 어디까지나 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언론사 스스로의 하나의 인식 내지는 평가를 보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언론사의 어느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은 그것이 어떠한 공적으로 신뢰할만한 과정(예를 들면 재판절차 등)을 거쳐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언론사 기 자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이나 또는 취재에 의하여 알게된 사정을 보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언론사의 입장으로는 자기나름의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건의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또한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보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요청에 쫓겨서 본의

아니게 완벽하게 진실된 보도만을 할 수는 없는 것임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에서 벗어나 언론기관도 역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하나의 평가 내지는 보도자로서 인식하고, 따라서 그 보도 역시 그러한 하나의 보도자의 의견 내지는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인식하여 정확한 보도, 나아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여론형성을 위하여는 그 사건에 관련된, 그러나 그 보도에는 나타나있지 않은 다른 한편의 당사자의 입장 내지는 견해를 원칙적으로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게재해주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게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찍이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독일 등에서 오래전부터 받아들여져서, 소위 반론권이라는 형식으로 인정되어 왔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정확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31일 공포된 언론기본법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가 위법이 발전적으로 해체됨에 따라 방송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 41조에서, 기타의 정기간행물에 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이하에서 이러한 내용의 권리를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위 법문의 표현에 의하면 위 권리의 내용이 「정정」 보도청구라고 되어있어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정」인 것으로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으나 위 제도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반대의 주장을 진술할 권리」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86. 1. 28. 선고 85 타카 1973 판결)도 이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 게재방법 및 효과등에 관하여는 지면관계상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생략한다. (그 상세는 줄고 언론중재 제 5호 「정정보도청구권」 참조)

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도된 내용이 진실에 반하여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정정」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히려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한편의 당사자에게도 이에 관한 진술·답변을 할 기회를 주자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여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정정보도문을 보도하게 되면 자신의 권위나 명예가 실추되게 된다는 거부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고, 이러한 정정보도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입장으로는 원래 보도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를 심리할 필요가 없고, 또한 심리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VII. 맺는말

이 글을 마치면서 언론수용자의 입장에서 언론의 비전문가이면서도 감히 몇 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언론의 사명은 첫째 「정확한 사실보도」이고 둘째는 이를 토대로 한 「공정한 여론의 형성」이다. 전자는 「사실」의 문제이고 후자는 「가치판단」 내지는 「의견」의 문제이다.

먼저 「정확한 사실보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사들이 한시라도 자만해서는 아니 될 점은 언론사는 「숙명적으로, 진실을 발견할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실은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언론사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고 취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언론사는 「신속한 보도」라는 또 다른 명제때문에 사실을 확인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마저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수긍한다면, 언론사는 언론에 보도된 자의 반박권 내지는 반론권을 인정하는 데에 결코 인색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반론권이야말로,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언론이 변증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언론수용자로 하여금 진실에 접근하게 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임을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정한 여론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언론사들이 어떠한 사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언론사 나름의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첫번째 말」과 「마지막 말」을 하는 데에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사건에 대한 「첫번째 말」은 이후 이에 대한 여론형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고, 「마지막 말」은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여론을 마무리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은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대한 평가는 확실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견해에 따라 여러가지 견해가 나타날 수 있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에 대하여 모든 언론이 확실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여론을 잘못 인도하는 수도 있는 지극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그와 같은 현상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합하여 나타나는 것일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는 언론수용자 개개인을 넘어서, 사회나 국가전체에 미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각종의 사회현상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결코 「순발력」에 의하여 여론의 바람몰이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되고, 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균형감각」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여러나라의 언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언론도, 언론수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사회의 「빛과 소금」인 언론을 결코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다 성숙되고 보다 세련된 언론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괴팅겐대학 연수
-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 ☐ 저술 : 「가정적 인과관계론」 외
- ☐ 현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